# 국제협력원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국제협력원(이하 “협력원”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3)

**제 2조 (직무)** 본 협력원에서는 국제교류 및 어학교육 전반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0. 23)

1. 외국 대학(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업무
2. 해와 자매대학 및 외국인 교환학생 선발과 연수에 관한 업무
3. 국제교류와 관련된 교직원, 학생의 해외파견 및 초청에 관한 업무
4. 외국과의 교신업무
5. 영문요람 발간 및 각종 외국어 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교수 사택관리 업무
7. 효율적인 어학교육 증진방안
8. 연구자료 조사 및 수집
9. 어학(특히 외국어)교육 및 위탁에 의한 어학교육
10. 기타 본 협력원과 관련되는 사업 (개정 2012. 10. 23)

**제 3조 (조직)** 본 협력원에 국제업무팀을 둔다. (개정 2012. 10. 23, 2017. 8. 28)

1. 국제업무팀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이에 관련된 장·단기 정책을 기획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어학교육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장하며,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외국대학 및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0. 23, 2017. 8. 28)
2. <삭제 2017. 8. 28>
3. <삭제 2012. 10. 23>
4. <삭제 2012. 10. 23>

**제 4조 (임원 및 직원)** 협력원에는 다음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12. 10. 23)

1. 원 장 : 원장은 협력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 부원장 : 협력원 각 부서에 부원장을 두어 해당 부서 업무의 운영을 통괄하게 한다.
3. 직 원 : 직원은 협력원 부서장 1명과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 하에 임용되는 사무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 5조 (현지직원 및 조교)** ① 협력원에는 현지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② 현지직원과 조교는 협력원의 사업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10. 23)

**제 6조 (홍보자문위원)** 업무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 현지에 홍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제 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협력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0. 23)

**제 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20. 9. 8., 2021. 3. 9.)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법무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과 학생 자치기구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대표 1명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9.)

③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 주무자가 된다.

**제 9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3)
2. 협력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3)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강좌개설)** ① 협력원의 필요에 따라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② 본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개설강좌에 등록할 때에는 강좌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협력원의 경비는 대학으로부터의 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 10. 23)

**제13조 (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협력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2. 10. 23)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8)**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8.)**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9.)**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